

# EU의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에 관한 공동시장 법제

## 1. 서 언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주요 중앙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Council), 위원회(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 감사원(Auditor) 등의 상호 견제 속에서, 그리고 EU의 주요 설립 조약들인 1차 법원과 이에 근거한 규칙(Regulations), 지침(Directives), 결정(Decisions), 권고(Recommendations) 및 의견(Opinions) 등의 2차 법원, EU법의 직접효력(Direct Effect)과 우위(Supremacy)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적 성질에 의하여 복잡하면서도 잘 정비된 역내 사법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하에 EU는 일반 국제사회에서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EU라고 하는 지역 국제사회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복지와 복지를 달성하려는 방법은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이하 EC)조약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sup>1)</sup>

### 1. EU공동시장 법제상의 자유이동

EU법의 여러 영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EC의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

### 각주

1) EC조약 제3조에 의하면 EC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에 걸쳐 각 영역별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 는 상품의 자유이동(free movement of goods), 사람의 자유이동(free movement of persons),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용역 제공의 자유(free movement of services), 다른 회원국 내에서의 회사설립(개업)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경쟁법(독과점금지법)(competition (antitrust) law), 산업에의 공동의 국가보조(State aid), 공동 경제금융정책(common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회원국들의 공동통화(common currency(euro))정책,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사회정책(social policy), 교육(education)정책, 문화(culture)정책, 공중보건(public health)정책,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정책, 환경(environment)정책 등이 있다.

고, 상품·사람(노동자)·서비스의 자유이동과 회사설립(개업)의 자유 등 4가지 자유들이 그 주요 내용이다. EC는 역내 평화와 경제적 안정의 달성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이러한 의도와 정신이 성취되도록 다양한 목표들을 설정해 놓았다. 이를 위해 EC는 통합의 최우선 목표였던 ‘공동시장의 설립’을 EC조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제3조 1항 (a)에서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EC가 취해야 할 관세(customs duties), 수량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그리고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기타 모든 조치(all other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의 금지 등 일련의 행동들을 나열함으로써 ‘공동시장의 설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제3조 1항 (c)에서는 ‘상품·사람(노동자)·서비스·자본의 자유이동 및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의 ‘철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sup>2)</sup> 제14조 제2항을 통해 이러한 자유이동이 보장되도록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이라는 모든 역내국경이 사라진 시장개념을 설정하여 위와 같은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sup>3)</sup> 그리고 제3조 제1항 (h)에서 공동시장의 기능화를 위해서 ‘지침’과 ‘상호인준(mutual recognition)’을 통한 회

원국들 간의 ‘법률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공동시장’은 ‘관세동맹(customs union)’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공동시장은 다른 회원국들내에서의 ‘상품의 자유이동’뿐만 아니라, ‘노동의 자유이동’, ‘자본 및 소비(지불, payments)의 자유이동’,<sup>4)</sup> ‘서비스의 자유이동’, 그리고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범주의 ‘회사설립(개업)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2. WTO체제하에서의 FTA의 실현

현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다자간체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보편적인 세계적 현상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EU FTA 체결협상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지역적 차원의 경제협력은 다자조약체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1994년의 GATT) 제24조에 근거하여 FTA 등 지역경제협력이 세계경제의 시장질서 자유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

### 각주

- 2) René Barents, *The Autonomy of Community Law*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p.199-200.
- 3) T.C. Hartley, *European Union Law in a Global Context: Text, Cases and Material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4), p.393 참조.
- 4) 자본과 소비(지불 또는 납부)의 자유이동에 관한 제한의 폐지에 관하여는 EC조약 제56조-제60조(구제73b조-제73g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들은 euro화의 도입으로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다.

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FTA가 단순한 ‘관세 철폐’에 그치지 아니하고, ‘역내시장’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 서비스, 투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EU FTA 체결은 ‘역내시장’에서 ‘무역 및 투자의 증가, 고용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up>5)</sup>

### 3. EU의 FTA의 법적 기초

EU의 FTA 정책은 EC조약규정(제131조~제134조) 등에 기초한 ‘공동통상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sup>6)</sup> EC조약 131조에 따라 EU는 세계경제질서의 기초 아래 대내적으로는 EU회원국들이 무역정책 및 법률의 조화를 통하여 원활한 단일시장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역외국가와 효과적인 경제관계를 유지·발전시킴으로써 EU회원국들의 협상력 제고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EU는 공동통상정책의 틀을 기초로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및 무역장벽 등의 이사회 규칙에 근거하여 EU의 대외무역관계에 적용되는 무역정책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하여 EU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보조하고 있다. 회원

국마다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무역정책을 EU 차원에서 단일화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영역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EU FTA 체결협상의 내용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한국정부에 EU 역내시장 수준의 개방을 점차 요구할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EU 공동시장 법제, 나아가서는 관련 주요 관례에 관한 분석과 검토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의 내용은 한·EU FTA의 초기에서든지 아니면 차후년도의 협상내용에서든지 요구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4. 이 글의 목적 및 범위

이 글의 목적은 위와 같은 배경하에 ‘회사설립(개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EU공동시장 법제에 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향후 한·EU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EU FTA가 체결되어 EU가 개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공동시장 법제 수준 정도로 한국에 대하여 개방을 요구할 경우, EU공동시장 법제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기초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EU가 어느 정도의 개방을 요구할 것인지, 그

#### 각주

- 5) 그러나 한편으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의 체결 및 발효 이후, 최근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시장개방과 자유경쟁의 원리가 가져오는 영향력과 그에 대한 우려는 1994년 WTO가 출범할 당시 가졌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정도로 국내적 반발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EU와 같은 대규모 경제주체와의 FTA를 통한 교역이 예외일 수는 없다.
- 6) 처음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을 기초로 시작하였고, 1968년에 대외무역에 대하여 ‘공동대외관계’를 부과하여 ‘관세동맹’을 성립하였다.

리고 한·EU FTA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한국에 대하여 개방을 요구해 올 것인지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EC조약상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의 개념, 개업의 자유(개업권)의 법적 근거와 타 규정과의 관계를, 그리고 개업의 자유의 적용 예외 규정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EC법상의 개업의 자유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EC조약상 회사설립(개업)의 자유

### 1.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의 개념

EC에서 다른 회원국에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즉 ‘회사설립의 자유’는 회사(companies) 또는 개인 사업가(businessmen)가 지점 또는 본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개업의 권리는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이 포함된 회원국 국민인 자영업자를 포함하며,<sup>7)</sup> 경제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다

른 회원국으로 이동하여 고정시설을 설치하고 개업한 후, 특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경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2.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의 법적 근거와 타 규정과의 관계

회사설립(개업)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가가 이주할 수 있는 권리와 적어도 사업가의 핵심 직원(key staff)이 사업가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람의 자유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해당되는 직원, 즉 고용인(종업원)은 그 권리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급여나 지위를 불문하고 어떠한 고용인이든지 EC법상으로는 ‘노동자(worker)’로 간주되어 EC조약 제39조(구제48조) 이하 규정의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권리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s)<sup>8)</sup>도 EC조약상 이와 유사한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sup>9)</sup> 개업의 권리와 서비스의 자유이동이라는 양자의 대상이

각주

7) Ralph H. Folsom, *European Union Law* (St. Paul, MN: Thomson/West, 2005), p.134.

8)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이동의 자유는 EC조약 제43조의 개업의 권리와 제49조의 서비스의 자유이동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9) Hartley, *supra* note 3, p.408 참조.

10) 회원국 국민이 자국에서의 자격, 경험을 기초로 자국에서 개업하는 것과 같이 한 회원국의 영역을 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국내사항(purely internal situations)에 대하여는 개업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Joined Cases C-54/88, C-91/88 and C-14/89, *Nino and Others*, [1990] ECR I-3537, para.12; 그러나 회원국 국민이 자국에서 개업할 때에도 한 회원국을 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즉 회원국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따라 자국에서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는 다른 회원국 국민과 동일한 곤란에

되는 자연인<sup>10)</sup>은 ‘자영업자’에 한정되며, ‘노동자’의 이동에 관하여는 EC조약 제39조(구제48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sup>11)</sup> 제39조 이하의 노동자의 자유이동과 제49조(구제59조) 이하의 서비스의 자유이동이 그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성질 자체는 동일하나, 그 활동이 고용계약하에 어느 노동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이는 제39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활동이 고용계약 없는 자영업자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에 이는 제49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sup>12)</sup>

한편 ‘서비스의 자유이동’은 개인이나 회사가 어느 회원국에 기반하는가와 관계없이 EU 전역을 통하여 고객, 구매자 또는 환자들에게

법률, 회계, 증권, 의료,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은행, 항공, 물류,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sup>13)</sup> 이는 EC조약 제4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providers)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타국에 이동하여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유와 수령자(receivers)가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하여 타국으로 이동하는 자유 등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처럼 ‘사람의 자유이동’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개업의 자유나 서비스의 자유이동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EC 공동시장의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자’나 ‘자영업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나 수요자’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

## 각주

처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회원국 국민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국에 대하여도 개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Case 115/78, *Knooks v. Secretary of State for Economic Affairs*, [1979] ECR 399, paras. 24, 28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회원국에서 개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제43조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즉 독일인이 영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사용이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적에 의한 차별로써 제39조(구제48조)와 제43조(구제52조)의 개업의 자유에 대한 위반으로 주장될 수 있다. Case 19/92, *Kraus v. Land Baden-Württemberg*, [1993] ECR I-1663, paras. 32, 42 참조; 이는 개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이동, 서비스의 자유이동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Oxford: Oxford Univ. Press, 2008), pp.803-804 참조.

11) Mike Cuthbert, *European Union Law* (London: Thomson/Sweet & Maxwell, 2006), p.92.

12) Case 36/74, *Wahrave and Koch v. Association Union Cycliste Internationale*, [1974] ECR 1405; Craig and De Burca, *supra* note 10, p.744 참조.

13) ‘회사설립의 권리’와 ‘서비스제공의 권리’의 구별(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예로써 설명될 수 있다. 잉글랜드에 기반을 둔 한 회계회사가 프랑스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단순히 프랑스에서 광고하고 사람을 보내어 ‘일시적으로’ 특별한 고객을 위하는 경우, 이는 프랑스에서의 서비스 이행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만약 프랑스에 한 ‘사무소’를 개장하고 프랑스식 운영에 따르는 경우, 이는 프랑스에서의 회사설립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14) 회사설립의 권리와 서비스제공의 자유 양자는 상호 배타적 관계이다. 회사설립의 자유는 타국에 이동하여 ‘고정시설’을 설치하고 개업한 후 ‘기한의 정함이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서비스제공의 자유는 타국에 이동하여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Case C-55/94, *Gebbard*, [1995] ECR I-4165; Nicholas Moussis, *Access to European Union* (Rixensart: European Study Service, 2006), p.101.

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했던 것이다. 나아가 공동시장이 설립된 이후 수년 만에 이러한 이주권(immigration rights)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큰 문제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EC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시장을 단지 경제기구가 아닌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재정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C의 사회정책은 각 영역별로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고, 이주권에 관한 정책은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C 내에서 개인 이주자에 의한 이점은 그 자체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은퇴한 사람, 학생 그리고 자산가 부류에까지 자유이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sup>15)</sup>

또한 EC조약 제48조(구제58조)와 제55조(구제66조)에 의해 EC공동시장에 있어서 개업의 자유와 서비스의 자유이동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다른 회원국 국적의 '자연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어 등기상의 주소, 경영본부, 주된 영업소를 역내에 두고 있는 '회사'도 회원국 국민인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개업의 자유

와 서비스의 자유이동은 개념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구별이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양자의 구별은 다른 회원국에서의 해당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고정적이고도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또는 '임시적 기반'으로 행해지고 있는가에 의해 판별될 수 있다.<sup>16)</sup>

이에 관하여 EC조약은 개업의 자유와 서비스의 자유이동에 관하여 기본적으로는 법제의 구조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양자에 대한 구별의 실익이 적다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상의 취지일 것이다. 먼저, 양자는 제43조(구제52조)와 제49조(구제59조)에 의거하여 '국적에 의한 회원국들의 차별의 금지'를 핵심사항으로 하고 있다.<sup>17)</sup> 이로써 자영업자는 개업하는 다른 회원국에서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다. 나아가 제44조(구제54조)와 제52조(구제6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지침'의 형태로 입법권(2차 입법)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제한의 폐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양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구

각주

15) Hartley, *supra* note 3, p.408 참조.

16) Case C-55/94, *Gebhard*, [1995] ECR I-4165, para. 26; Anthony Arnall, *The European Union and its Court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 Press, 2007), p.467; Josephine Steiner, Lorna Woods and Christian Twigg-Flesner, *EU Law* (Oxford: Oxford Univ. Press, 2006), pp.448-449.

17) 경제활동을 위하여 선박을 영국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소유자가 수입국(다른 회원국)의 거주요건과 국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영국측의 요구는 개업의 자유에 있어서의 국적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Case C-221/89, *Factortame and Others*, [1991] ECR I-3905, paras. 39, 43.

제54조)에 의거하여 개업의 자유와 관련된 지침의 채택에 있어서, 이사회와 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일반적 원칙으로써 그러한 개업의 자유는 생산과 무역의 발전에 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일 것. 둘째, EC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지위를 갖는 회원국들의 권한 있는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할 것. 셋째, 개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회원국들 간의 기존의 협정 또는 회원국의 국내입법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절차나 관행을 폐지할 것. 넷째, 다른 회원국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자영업자로서 계속 활동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권리를 보장할 것. 다섯째, 어느 회원국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할 것. 여섯째, 다른 회원국에서의 대리점, 지점, 자회사의 설립조건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러한 대리점, 지점, 자회사의 본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개인의 입국조건과 관련하여 개업의 자유에 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 일곱째, EC 내에서의 동등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회사의 구성원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의 범위를 필요한 경우 조정할 것. 개업의 조건이 회원국들의 국가보조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이사회와 위원회가 개업권 보장을 위해 지침

을 채택하는 경우에 이를 유의할 것 등이다.

또한 개업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7조(구제57조)와 제55조(구제6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다른 회원국에서의 개업권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목적으로 학위, 직업자격 등의 상호승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에 대한 각 회원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정하는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 III. EC조약상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의 적용 예외

한편,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에 관한 제한의 폐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제45조(구제55조)에 의거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회원국의 공권력의 행사(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와 관련된 경우에는 개업의 자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제46조(구제56조)에 의거하여 외국인을 특별히 취급하는 공공정책(public policy), 공공안전(public security), 공공보건(public health)의 경우에는 개업의 자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회원국들은 개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sup>18)</sup> ‘개인의 자유 이동권’은 - 가족 구성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에 관한 이사회 규칙 1612/68에 의거하여 EC회원국의 ‘국적’을 갖는 국민에 한정하여 인정된다.<sup>19)</sup>

각주

18) Moussis, *supra* note 14, p.102; Steiner, Woods and Twigg-Flesner, *supra* note 16, pp.447-448.

19) Case 267/83, *Diatta v. Land Berlin*, [1985] ECR 567; Craig and De Burca, *supra* note 10, p.781 참조.

## IV. 결 언

### 1. 한·EU FTA에 따른 시장개방과 활성화

이 글을 마침에 있어서는 한·EU FTA 체결 하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염두에 두고 피력하고자 한다. 체약국들 간 FTA체제하에서는 일단 궁극적 또는 장기적으로는 ‘국적’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따라서 한·EU FTA하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라 EU 시민권자들의 한국시장으로의 진출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한국 국적자의 EU시장으로의 진출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EU 간에는 EC조약 제43조 및 이하의 규정에서의 지침과 상호인준이라는 법과 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는 협정상의 내용을 통하여 상호 간의 지식이나 자격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시장질서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 당사자 간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상호 변호사 활동의 교류가 증대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거대 EU시장에 대한 한국 국적자의 변호사 개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측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다만 양 당사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제공의 질적 차원에서는 개별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EU가 지리적으로 거대하다고 하여 한국의 EU 진출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지역통합질서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 EU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의 자질이 공동시장 질서를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

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 국적자의 변호사 사무소에 적잖은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EU법에도 해박한 전문변호사 양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한·EU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수준

경제통합 중에서도 상당한 발전의 양상에 해당하는 공동시장체제에 비하여 FTA는 경제통합의 가장 초기단계의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EU도 초기에는 자신의 역내질서의 수준인 공동시장법제 수준으로까지 한국의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EU FTA의 향후 활성화 및 발전 정도에 따라 시장개방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통합에 있어서 성숙된 틀을 갖추고 있는 EU가 한국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자신의 요구수준을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는 27개 회원국을 대변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개 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지역통합체 대 지역통합체’가 아닌 ‘지역통합체 대 (하나의) 국가’가 협상에 임할 때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한·EU FTA가 체결되면 EU는 상당한 수준의 ‘관세 철폐’와 ‘내국민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네거티브방식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즉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도록 요청할 것이



고, 나아가 점차 초기의 과도기적 조치가 사라질 것이고,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한·EU FTA에 따른 EU법 전문가 인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끝으로 EU는 이미 5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하여 경제통합의 역내질서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FTA 체제하 EU와의 마찰이나 분쟁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회사설립(개업)의 자유라고 하는 특정된 영역뿐만 아니라, EU 공동시장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EU에서 운영되어 온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me)인데, 이 프로그램은 1987년부터 시작된 EU의 학생교환 프로그램(일종의 자유로운 인적교류 프로그램으로서의 대학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점차 교수, 대학행정요원 등의 교류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제도)은 15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철학, 신학,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1466~1536)’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역내 자유로운 인적교류로 유럽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학생교환 프로그램에 의하면 교환의 양쪽에서 모두 자격(학위 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내 취업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서는

이 같은 대학 간 학생교환 프로그램이 EU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유럽통합을 위해서는 1992년 EU가 창설되기 이전에 이미 향후 자유로운 인적이동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장차 국경 없는 취업과 경제활동의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에라스무스 참가절차는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닌데, 대상국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나라, 학교, 학과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U는 1995년부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유치원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모든 교육기관의 학생, 교사, 교수, 행정요원의 국가 간 상호교류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EU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 특히 대학생들의 대내적 기반을 다짐과 아울러 대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는 장차 한·EU FTA시대를 맞이하여 EU의 인적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각종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능한 EU측 담당자를 상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더더욱 EU법에 해박한 변호사 등의 EU법 전문가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 두 수

(한국외대 강사)